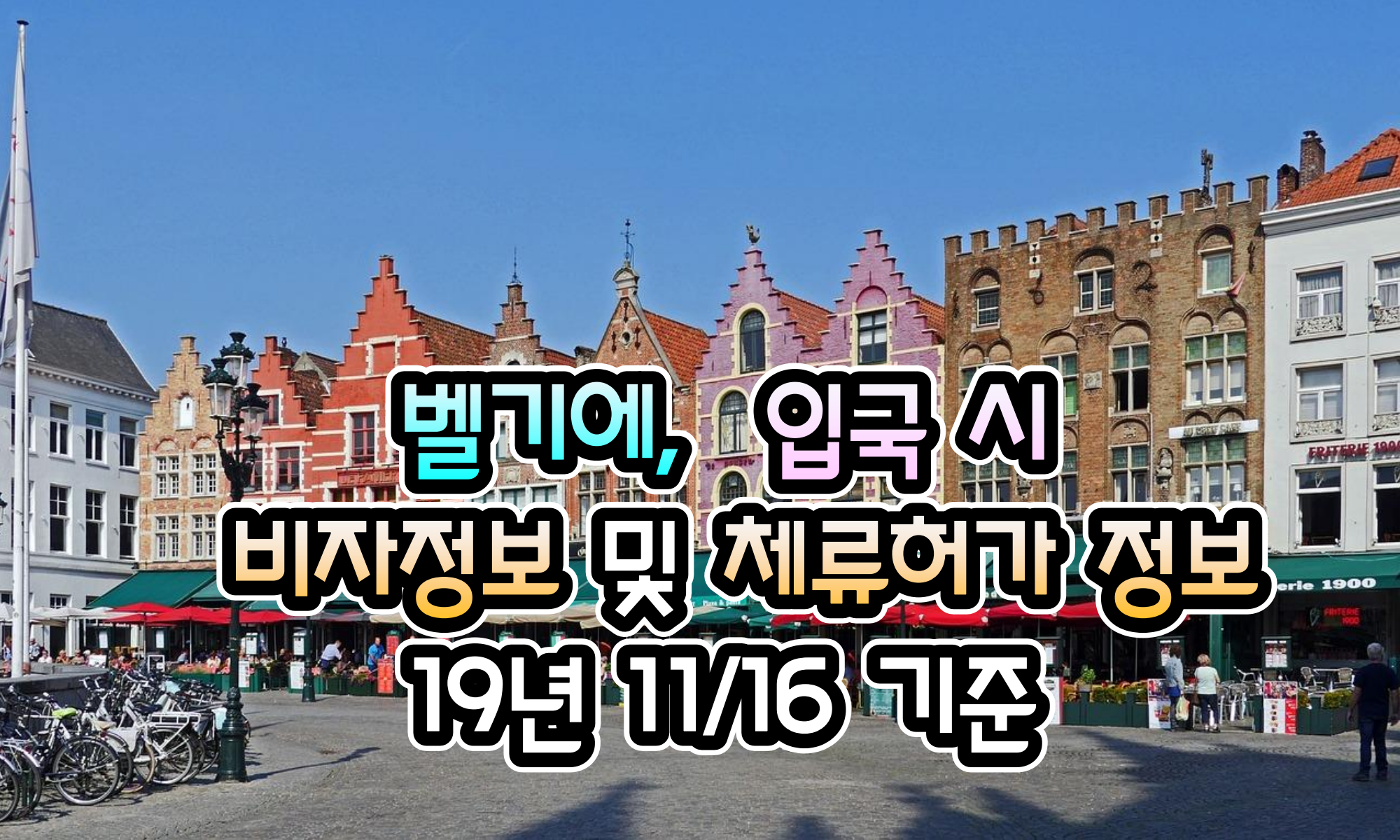
벨기에, 입국 시
비자정보 및 체류허가 정보
19년 11/16 기준

[벨기에] 벨기에, 입국 시 비자 정보 및 체류허가 정보 - 19년 11/16 현재

[사증(비자) 필요성]

ㅇ 우리나라와 벨기에 양국간에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(1970년)되어 있으므로 관광. 통과 목적의 방문일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 미만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ㅇ 벨기에는 셍겐(Schengen)협정 가입국이므로 셍겐국경법을 적용하여 셍겐지역내에서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중 90일만 체류가 가능하며, 9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

☞ 양자 사증면제협정과 셍겐국경법 관계 :
벨기에는 셍겐국경법(최장 6개월 중 90일 미만 체류) 보다 먼저 체결된 양자 사증면제협정을 존중함.
그러나, 무비자 입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장기체류를 위한 편법으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당국으로부터 입국을 불허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도 있음.
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 목적(취업, 유학 등)에 부합하는 사증(비자)를 발급 받아야 함.

☞ 셍겐협정은 가입국(25개국) 상호간에 국경심사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조약이며, 가입국은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독일, 프랑스, 오스트리아, 덴마아크, 핀란드, 그리스, 아이슬란드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웨덴, 에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타, 헝가리, 폴란드, 체코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위스 임.

[여권 잔여기간]

ㅇ 벨기에 입국 시 여행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.

[기타 유의사항]

o 벨기에, 베네룩스 및 셍겐국가 영토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 대상자이든지 비자 면제 대상자이든지, 벨기에 단기방문 및 체류하기 전에,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할 때, 국경 도착시, 공항만 입국시 및 벨기에 체류 중 검문검색시 아래 조건에 대처하여야 합니다.

- 신분증명서(벨기에 정부발행) 또는 여권(벨기에내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잔여 유효기간 필요)을 소지하여야 한다.
- 필요시, 방문 목적 및 상황(생활형편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공하여야 한다.
- 체류, 귀국 또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.
  * 호텔예약, 귀국 항공권, 현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화폐, 현지에 통화 가능한 수표 및 신용카드, 인증된 책임보증 원본 또는 사본, 취업계약서, 은행구좌 명세서 등으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.
- 입국금지자가 아니어야 한다.
- 벨기에 치안, 벨기에 또는 다른 셍겐국가의 국제관계 및 벨기에 법과 질서(남루한 옷차림 등)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체류허가

- o 벨기에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함.
- o 비 EU회원국의 국민은 벨기에에 입국 후 8일 이내에 거주하는 관할 시청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.
- o 벨기에는 공식적인 영주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, 이에 대신하여 노동허가 A 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은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됨.

[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]

□ 2010.3.22. EU외교장관들은 장기체류비자(3개월 이상 및 D 비자)를 소지한 제3국 국민들이 거주증(residence permit)을 소지한 제3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, 가까운 시일내에 동 규정이 시행될 것입니다.

- 상기는 그간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해당 비자발급국 내에서만 체류하도록 하고, 다른 쉥겐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임.

□ 아울러, 개정된 규정은 쉥겐협정 회원국은 장기체류비자 허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 1년 이상 체류를 허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장기체류비자를 거주증(Residence permit)으로 대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보적 측면에서 쉥겐협정 회원국이 제3국 국민들에게 장기체류비자 발급할 경우에는 거주증 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쉥겐정보시스템(Schengen information System, SIS)을 통해 사전 확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
출처 :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 (191116)

[안내] 여행 직거래 플랫폼 '여행거래소 www.GV10.com' 모바일에서 쉽게 보기

갤럭시 폰에서

모바일 검색창에서
모바일 홈페이지
www.GV10.com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-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!!

아이폰에서